

Q1. 근로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

Ex) 계약직, 일용직, 단시간 근로자

국민연금, 건강보험을 제외한 **고용보험, 산재보험** 가입 필수!
- 근로기준법 외 기간제법 등 별도 특별법의 규율을 받음
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

Ex) 정규직

처음 입사 할 때부터 **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** 가입 필수!
-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음

Q1. 근로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
기간제법상 특칙으로 규율 받는 사항

- 1)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 (예외 있음)
- 2) 통상근로자 전환시 우선고용의무
- 3)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봄
- 4) 차별 처우 금지
- 5)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체결시점 교부는 의무 없음)

4대보험 가입제외 요건

- 1) 고용, 산재: 없음
- 2) 건강보험: 1개월 미만 기간, 비상근 및 초단시간(1월 60시간 미만)
- 3) 국민연금 (하기 외 기타 예외 더 있음, 매우 복잡)
 - 가. 1개월 미만 기간
 - 나. 1월 이상 근로하지만 1월 근로일수 8일 미만,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, 1월 임금액 220만 원 미만 (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)
 - 다. 1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, 단 아래는 가입의무 있음
 - 3월 이상 근로하고 노사 모두 가입희망
 - 1월 이상 근로하고 1월 임금 220만 원 이상

Q2.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?

고려해야할 점

- 1) 일용직 근로계약 처리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과 구별하여야 하며, 일용직에 맞는 고용 증빙처리가 필요
 - 2) 일반 정규직, 계약직과 다르게 별도 고용,산재 신고 필요
 - 최초 채용일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
 -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(세무서)
 - 3) 국민연금, 건강보험은 해당자에 한하여 채용(종료)일 익월 5일까지 일괄 취득, 상실 신고
- ※ 일용직 별도 관리하여 3년분(근로자분 포함)을 회사에 추징하므로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